

# UCP 해설

유 하상

## ■ UCP 600의 개정 배경

### (1) 신용장통일규칙 개정의 필요성 제기

#### ■ 신용장 분쟁 발생 현황

- 신용장은 무역대금결제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왔음, 하지만
- 은행이 잘못 취급/어구의 해석의 상이시
- 불필요한 오해와 분쟁의 소지/해결을 위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수반
- 지난 10여 년 동안(UCP 500의 조문해석과 관련된 분쟁 건수
- Article 9,13, 14, 21, 23, 37 & 48의 7개 조문에 대한 분쟁건수가 58%를 차지
- 17개 조문은 거의 없었음(10년 동안 개정이 없었음)

#### ■ 기타 개정 사유

- 상관습 변화에 따른 개정의 필요성(약 10년 단위로 개정되어옴)
- 80%에 달하는 높은 불일치율
- 은행의 의무, 서류심사의 기준, 상업송장, 양도가능신용장 등에 대한 높은 개정요구
- 원본서류, 부적절한 거절, 사기, 연지급신용장 등에 대한 잦은 법적 소송
- B/L사용에 있어서 새로운 면책자의 등장

#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

UCP600의 주요 개정내용

## ■ UCP 600의 주요 개정 내용 (1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변경내용  | 비고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|---|
| 서류심사기간 및 하자서류의 통지기간 단축(제 14조) | 선적서류 내도일 익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 - 5영업일 이내   | 2영업일 단축, 상당한 기간 표현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신용장의 취소불능성(제 2-3조)            | 모든 신용장은 그 명칭이나 기술에 관계없이 취소불능   | 취소가능신용장 조문 삭제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용어 정의의 명확화(제2조)               | 정의 조항 신설<br>지급이행, 매입 등   | 용어 일관성 증대   |
| 기준일자에 관한 해석 변경(제3조)           | 선적기간 계산상(기존)<br>From(당해 일자 포함,<br>after(당해 일자 미포함<br>만기일 결정(신설)<br>From, after 모드 당해 일자 미포함(제외 | 선적일 또는 선적기간에 관해서만 적용되는 일자를 만기일 등 모든 일자에 적용되는 것으로 변경 |

#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

UCP600의 주요 개정내용

## ■ UCP 600의 주요 개정 내용 (1)

| 구분                      | 주요 변경내용   | 비고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|--|
| 서류의 심사기준과 일치하는 제시(제15조) | 신용장 제조건, UCP600 및 ISBP의 규정에 의거한 서류 제시 필요                      | In compliance L/C terms를 complying presentation 개념으로 변경함으로써 가시적인 내용뿐만 아니라 비가시적인 내용도 포함 |
| 연지급신용장의 할인허용(제7조)       | 신용장 발행은행의 확약에 포함, 반영되어 연지급신용장도 만기일 전에 할인(선지급 또는 구매)할 수 있도록 허용 | 조항 신설  |
| 지정은행 개념 신설(제12조)        | 신용장의 확인은행, 지급은행, 인수은행, 매입은행 등을 반드시 지정                         | Available with any bank라고 명시하지 않는 한 지정은행만 개설은행에 대한 권리행사 가능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하자통지 방법(제16조)           | 하자통보 요건 강화<br>- 지급거절의 사실 명시<br>- 서류의 행방 명시방법 추가               | 서류의 행방 명시방법이 두 가지에서 4가지로 늘어남(5영업일 이내, 전기통신 및 신속한 수단 이용)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
#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

## 제1조

### ■ 제1조 조문해석

####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

화환신용장에 관한 통일규칙 및 관례, 2007년 개정, ICC 출판물번호, 제600호("UCP")는 신용장의 본문이 이 규칙에 따른다고 명시적으로 표시하고 있는 경우 모든 화환신용장 (“신용장”)(적용 가능한 범위에서 모든 보증신용장을 포함한다)에 적용되는 규칙이다. 신용장에 명시적으로 수정되거나 또는 배제되지 아니하는 한, 이 규칙은 모든 관계당사자를 구속 한다.

#### ❖ UCP의 임의 규칙성 강조

- ✓ 종전의 “화환신용장을 위한 통일관습 및 관례”란 표현을 그대로 존치하되, 당사자가 준거 문언을 둔 경우에만 적용된다는 것을 더욱 분명히 하기 위하여 UCP가 “법”이 아니라 하나의 “규칙”을 의미하는 Rules란 표현을 제1조에 명시적으로 추가로 삽입
- ✓ 이에 따라 UCP 600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이 규칙이 적용됨을 분명하게 표시하여야 한다. 은행은 신용장에 UCP 600이 적용된다는 문구가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.

#### 신용장통일규칙 채택과 준거문언 표시

- This L/C is subject to UCP, 2007 Revision, ICC Publication No. 600

#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

제1조

## ■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범위

### ① SWIFT로 전송되는 신용장(가장 많이 사용하는 방식)

Message Type 700(MT700)을 이용하고 있으며, UCP 준거 문언은 다음과 같다.  
 “40E/APPLICABLE RULE : UCP LATEST VERSION”  
 “이 신용장은 신용장 개설일자 기준 발효 중인 ICC의 UCP가 적용된다.”

### <표> SWIFT 방식 신용장의 적용 규칙에 대한 설명

| CODE 명                 | CODE의 의미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UCP LATEST VERSION     | 본 신용장은 발행일 현재 발효중인 UCP가 적용된다.       |
| EUCP LATEST VERSION    | 본 신용장은 발행일 현재 발효중인 eUCP가 적용된다.      |
| UCPURR LATEST VERSION  | 본 신용장은 발행일 현재 발효중인 UCP와 URR가 적용된다.  |
| EUCPURR LATEST VERSION | 본 신용장은 발행일 현재 발효중인 eUCP와 URR가 적용된다. |
| ISP LATEST VERSION     | 본 신용장은 발행일 현재 발효중인 ISP가 적용된다.       |
| OTHR                   | 본 신용장은 다른 규칙이 적용된다.                 |

주: URR : 은행간 대금결제에 관한 통일규칙, ISP : 보증신용장 통일규칙, OTHR : '/' 뒤에 35컬럼 이내에 해당 규칙이 언급된다.(예 : OTHR/SUBJECT ENGLISH LAW)

#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

## 제1조

### ■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범위

#### ② 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보증 신용장을 포함한다는 의미는?

- UCP는 화환신용장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**적용 가능한 범위 내에서** 보증 신용장에도 적용할 수 있다는 의미
- 예컨대 개설은행의 의무(7조), 신용장의 통지 및 이에 대한 조건 변경의 통지(9조), 일치하는 제시(15조) 등이 적용 가능한 조항,
- 선적서류 관련조항(19-25조)나 보험서류와 부보범위(28조)는 적용하기 어려운 조항

#### ③ 보증 신용장 개설 시 적용 가능한 일반적 규칙은?

- ✓ 보증신용장은 UCP 600 뿐만 아니라 보증신용장 통일규칙(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 1998) (ISP 98)이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규칙임
- ✓ UCP 600은 어음만을 요구하는 단순한 보증신용장에는 충분히 적용할 수 있지만, 복잡한 보증 신용장(예컨대 장기간 또는 자동연장 조건이나, 법률의 적용에 의한 양도 등)의 경우는 더 구체적인 규칙이 필요하므로 ISP 98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
- ✓ 신용장 통일규칙은 원래 화환신용장에 대하여 제정되었으므로 Standby LC에 적용을 하게 되면 엉뚱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음. 따라서 Standby LC 를 위한 통일규칙인 International Standby Practices 1998 을 제정을 함

#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

## 제1조

### ■ 제1조 신용장통일규칙의 적용 범위

④ 이 규칙은 신용장에서 명시적으로 수정하거나 그 적용이 배제되지 않는 한 모든 당사자를 구속한다

❖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 : 개설은행, 수익자, 확인은행, 신용장에서 수정하거나 배제하지 않는다면 모든 당사자를 구속, 제2조에 개설의뢰인에 대한 당사자(party)라는 표현은 신용장 거래의 당사자가 아니라 개설은행의 고객이라는 정도로 이해되어야 함.(참고로 특수한 경우 개설의뢰인이 개설은행의 고객이 아닌 경우도 있다.)

◆ 개설의뢰인은 자기가 원하지 않는 UCP 규정을 적용 배제하거나 수정할 수 있음

예컨대 제20조 c항 2에서는 선하증권을 요구하면서 환적을 금지하더라도 화물이 컨테이너에 선적되고 하나의 동일한 선하증권이 전항해일정을 커버하면 환적이 허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. 따라서 화물이 컨테이너에 선적되면 환적이 허용되므로 개설의뢰인이 이 조항의 적용을 배제하여야만 컨테이너에 선적되더라도 환적을 실제로 금지할 수 있다.

### SWIFT에 기재하는 예

"47A : Additional conditions SUB-ARTICLE 20(c) 2 DOES NOT APPLY"

신용장 발행일 이전 일자를 표시한 서류를 거절하기 위해서는

"47A : Additional condition : DOCUMENTS MUST BE DATED EARLIER THAN THE DATE OF ISSUANCE OF THIS CREDIT" 즉,

"서류는 신용장 발행일 이전 일자를 표시할 수 있으나, 서류 제시일보다 늦은 일자를 표시하지 않아야 한다는 문언을 삽입해야 한다.